
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34호

「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, 「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### 조례안 예고

#### 1. 조례명

- 가.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나.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조례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

##### 가.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.
- 2) 주요내용
  - 가)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·각하 결정 기한 신설(안 제11조)
  - 나)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자 변경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  - 다) 주민조례 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나.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1) 개정이유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및 품목별 가액을 조정하고자 함.
- 2) 주요내용
  - 가)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을 추가(안 별표1)
  - 나) 농수산물·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·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의 가액을 상향(안 별표1)
  - 다)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의 가액을 상향(안 별표1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5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제·개정 (안) | 수 정 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bluewad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6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\_\_\_\_\_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|    |    |